



# 서울특별시 SH공사

수신자 내부결재  
(경유)

## 제목 SH콜센터 위탁운영용역 입찰참가자격 변경

### 1. 관련근거

- 『SH콜센터 위탁운영 용역 추진계획(안)』(본부장 방침 제484호,2015.10.29.)
- 「입찰참가자격 개선 요청」(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서울시회-3605호,2015.11.10.)
- 『정보통신공사업법』 제2조(정의) 및 제3조(공사의 제한), 제29조(공사의 도급)

2. 위 호에 근거하여 SH콜센터 위탁운영 용역 입찰참가자격을 다음과 같이 변경하여 긴급공고 하고자 합니다.

### 1) 변경 내용

	구 분	기 준	변 경
입찰참가자격	상담인력 부문	입찰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콜센터 단 일규모(동일한 사업장) 55명 이상의 위탁 운영 실적이 있는 업체	좌 동
	시스템 유지보수 부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입찰공고일 기준 『소프트웨어산업 진흥 법』 제24조에 의한 소프트웨어사업자 (분야: 컴퓨터관련 서비스업)로 등록 한 업체</li> <li>○ 『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 한 법률 시행령』 제9조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확인서를 가지고,</li> <li>○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른 시스템관리 용역(81111899) 또는 소프트웨어 유지 및 지원서비스 용역(81112299)에 대한 '직접생산확인증명서'를 갖춘 업체</li> </ul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○ 좌 동</li> <li>○ 좌 동</li> <li>○ 좌 동</li> </ul> <p style="color: blue;">○ 입찰공고일 기준 『정보통신공사업법』 제 14조에 의한 정보통신공사업 등록업체</p>

### 2) 변경 사유

- SH콜센터 시스템 장비는 『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』 제2조 제2항 [별표1]에서  
정한 교환설비 공사 및 정보망설비공사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설비로서,
- 동법 제3조에 따라 동 설비의 설치 및 유지·보수에 관한 공사와 이에 따르는

부대공사는 정보통신공사사업자로 등록된 자가 수행하여야 함.(미래창조과학부 답변)

3) 긴급공고 근거 및 사유

- 『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』 제35조 제6항
- 기존 콜센터 위탁운영 용역기간이 만료함과 동시에 유찰가능성이 존재함에 따라 입찰공고 기간 단축 등 긴급한 계약체결이 필요

- 붙임 1. 한국정보통신공사협회 공문  
2. 미래창조과학부 질의답변  
3. [별표 1] 공사의 종류(제2조제2항 관련)  
4. 긴급공고사유서. 끝.

---

팀 원	<b>김승선</b> 파트장	<b>강인구</b> 주거복지팀장	<b>이상현</b> 주거복지처장	<b>서종균</b>
주거복지본부장	전결 12/02 <b>이종언</b>			

협조자

시행 주거복지팀-3500 (2015.12.02) 접수 ()  
방참번호 본부장 방참 제538호  
우 133-588 서울 강남구 개포동길 621 /  
전화 3410-7691 전송 3410-7686 / kss@i-sh.co.kr / 공개